

		P. R	필 요	불필요
자체통계	기안처	상공과 신부전	전화번호	근거 서류 접수 일자 2-6378
상정 담임	상공과장 	산업국장 	제 1 부시장 	시장
		6.18	8.23	
판계 판서명	무서 담당 총무과 법제 담당 내국과 장			
기안년월일	64. 6. 27			
분류기호	서산상 1343 전체통제 종결 			
경수 참	건	의	발신	
제 목	회발우 소화필증 회수요령 고시			
부정 우를 사용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요령은 는 는 회수요령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				
부정 우를 는 회수요령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				
부정 우를 는 회수요령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				

18
22

1343 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8 호

회발유 ~~유류~~ 소화필증 최급 요령

석유류 운송 규정 제 17조 (소화증 단속)에
의거 부정 회발유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
실시하고 있는 소화필증 제도를 차후부터는 본
요령에 의하여 운영한다.

최급 요령

1. 운수 영업용

종전 최급 요령에 의거 계속 실시한다.

2. 관수용

현재까지는 소화, 미소화의 구별 없이 기준량
(자동차) 혹은 신청량에 의하여 배정하고 일의 사
용케 하였으나 향후 배정량의 미소화 시에는 미
소화량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소속장의 미소화
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

3. 자가용

기준량에 의거 배정하고 그 배정량에 대
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소화치 못하였거나 부정
유류 (회발유) 조달의 근원이 있을 시에는 관계
당국에 조사 의뢰한다

단 "기준량 초과 신청분에 대하여는 특별 조치)
하고 특별분에 한하여 소화필증 최급 요령에서
제외 한다. ~~21~~

16

8

1964년 6월 27일

서울특별시장 / 윤치영

안 2.

수신 증보실장

발신, 주 장

제목 통 간

부정 유료 사용을 단속하기 위하여 협조
요령을 송부하고자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유찰 제발부 협조와 함께 청탁요령 1부 끝